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67호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3호(2006.01.1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악구고시 제2006-84호(2006.12.05.)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2012.09.0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2013-39호(2013.05.1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5호(2017.05.2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관악구고시 제2017-79호(2017.10.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관악구고시 제2018-17호(2018.03.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주요 변경내용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 면적 : 24,558.1㎡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명희)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6길 1, 정동빌딩 2층(신림동)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사장 김세용)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 2006. 12. 01.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 06. 1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지하3층 지상35층 연면적 146,677.9980㎡ 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1,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25.28%, 용적률 : 405.43%, 높이 : 101.75m

아.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사업시행(변경)인가 (2018.08.01.)	사업시행(변경)인가 (2019.06.17.)
연 면 적		146,501.4816㎡	146,677.9980㎡
용 적 률		405.40%	405.43%
보육시설		1,219.1851㎡	1,219.3218㎡
근린생활시설		394.9504%	394.1079%
단위세대	44	44.9696	44.9796
	59A	59.9891	59.9882
	59B	59.9630	59.9986
	84	84.9545	84.9433

- 변경사유
 - 사용성 개선을 위한 단위세대 평면 및 각동 계단실 변경
 - 단위세대 및 각동 계단실 변경에 따른 배치도, 입면도 수정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879-632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865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1. 개정이유

1인 가구 증가 및 1회용비닐 사용규제 등 폐기물 배출환경 변화에 맞춰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를 추가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비율 조정하여 청정삶터관악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에 신규 규격 추가 (안 제5조 2항 별표 2)

1) 1인가구 폐기물 배출 편리성 제고를 위해 소용량 일반용 규격봉투 추가

기 준
5, 10, 20, 30, 50, 75, 100 ℓ



개 정 (안)
기존 외 1, 2, 3ℓ 추가

2)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감량을 위해 재사용 규격봉투 다양화

기 준
20 ℓ



개 정 (안)
기존 외 3, 5, 10, 30 ℓ 추가

나.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비율 상향 (안 제12조 별표 5)

○ 행위의 수위를 고려하여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비율 상향

기 준
과태료부과금액의 40%



개 정 (안)
과태료부과금액의 50%

다. 추가된 규격봉투의 종류에 맞춰 봉투판매소 판매이윤에 규격 추가
 (안 제7조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

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